

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Non-Discrimination & Anti-Harassment Declaration

제정 및 최종수정	2023년 6월 14일
문서 담당부서	(정) HR팀 (부) 경영개선팀

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선언

(주)F&F(에프앤에프, 이하 당사)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이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동등하게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선언합니다.

1. 개요

① 제정 목적

당사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에서, 직장 내 괴롭힘, 직장 내 성희롱, 직장 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, 모든 임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② 대상

이 선언은 당사 및 계열사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로서 당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적용합니다.

2. 원칙

① 직장 내 차별 행위 금지

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배제하거나, 차별적이고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② 직장 내 성희롱 금지

직장 내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.

③ 직장 내 괴롭힘 금지

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
④ 무관용의 원칙

당사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, 근로기준법, 산업안전보건법,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차별 및 괴롭힘과 관련한 법률을 준수하고, 상호 존중과 존엄을 기반으로, 상기와 같은 차별 및 괴롭힘 등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3. 발생 시 조치 및 관리

① 사건 발생 시 프로세스



② 신고 접수 채널

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, 소속 부서장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 창구에 보고해야 합니다. 또한 차별 및 괴롭힘의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.

[대표 신고 채널]

- 가. ☎F&F VOE (그룹웨어 인트라넷)
- 나. HR팀 고충처리 담당자 신고
- 다. 사이버 신문고 <https://clean.fnf.co.kr/> (인트라넷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)

③ 조사 실시

당사는 피해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,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합니다.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,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시 또는 요청 시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,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.

④ 인사 조치

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이 인정된 경우 상벌 지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4. 직원 교육

당사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.

[부칙]

이 선언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.